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6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김현수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0.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등록번호(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에 관하여 각 체결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청구 부분과 그 원상회복으로 구하는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①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2023. 2.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3. 2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3. 1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5. 1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6. 8.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②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번호에 관하여 2023. 3. 10., (차량번호 3 생략) 번호에 관하여 2023. 4. 21., (차량번호 2 생략) 번호에 관하여 2023. 5. 10., (차량번호 4 생략) 번호에 관하여 2023. 6. 8.에 체결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안산시청 2023. 2. 10. 접수 제49204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안산시청 2023. 3. 27. 접수 제526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④ 피고는 원고에게 70,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내용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5대(청구취지 ①항)와 등록번호판 4개(청구취지 ②항)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위 자동차 5대와 등록번호판 4개가 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각 목적물별로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C과 피고가 모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별개로 등록번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표상하는 권리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와 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이전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정이 필요할 때는 자동차를 차대번호로, 운송사업면허를 등록번호로 구분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자동차와 등록번호가 일체로 이전된 경우)

C이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채권이 발생한 후에 피고가 C으로부터 2023. 2.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자동차라 한다)와 그 등록번호(차량번호 5 생략)을, 2023. 3.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자동차라 한다)와 그 등록번호(차량번호 6 생략)을 각 매수한 사실은 대체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해의사는 그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제1, 2자동차의 매수를 결정하고, 매수 후에는 안산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등록신고를 마쳤다. 이와 같이 상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내부적, 외부적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점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다.
 - ② 피고는 C에 적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중개업자 D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하여는 3,900만 원(2023. 1. 30. 1,000만 원, 2023. 1. 31. 1,100만 원, 2023. 1. 31. 1,800만 원)을,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는 4,150만 원(2023. 3. 16. 2,050만 원, 2023. 3. 10. 200만 원, 2023. 3. 17. 1,900만 원)을 매수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된다. 위 매수비용 중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하더라도 C 측에 전달된 돈은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하여 2,800만 원(2023. 1. 30. 1,000만 원, 2023. 1. 31. 1,800만 원),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 2,050만 원(2023. 3. 16. 2,05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자동차의 매매대금 1,727만 원(= 자동차 중고가 1,027만 원 + 번호판 가격 700만 원)과 이 사건 제2자동차의 매매대금 2,397만 원(= 자동차 중고가 1,697만 원 + 번호판 가격 700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많거나 부당하게 저렴하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청구취지 ①항의 일부 및 ③항)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자동차와 관련 등록번호(자동차와 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이전된 경우)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와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7. 12. 13.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자동차(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3자동차라 한다)와 그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약 5년 남짓 경과한 2023. 3.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제3자동차와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그로부터 6일 후인 2023. 3. 16. F에게 이 사건 제3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준 사실, 같은 날인 2023. 3. 16. 피고와 F은 자동차와 등록번호를 분리하여 F은 이 사건 제3자동차(차대번호 E)에 등록번호(차량번호 7 생략)를 부여하여 변경 등록하고, 피고는 등록번호(차량번호 1 생략)를 새로 구입한 신규차량(차대번호 G)에 부여하여 신규 등록한 사실, 피고는 C에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피고가 C으로부터 2023. 3. 10. 이 사건 제3자동차와 여기에 부여된 등록번호(차량번호 8 생략)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불과 6일 후에 이 사건 제3자동차는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다른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피고는 C으로부터 매수한 등록번호(차량번호 8 생략)만을 보유하여 신규자동차에 위 등록번호를 부여한 점,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중개업자가 깊이 관여하여 상당한 대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점, 피고가 C에 지급한 금액에는 자동차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표상하는 등록번호와 그 여객자동차가 독립한 재화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C으로부터 등록번호(차량번호 8 생략)만을 매수하고, 위 등록번호가 부여되었던 이 사건 제3자동차(차대번호 E)는 피고가 매수하지 않은 채 C으로부터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사해행위의 대상인 법률행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이에 따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이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양수인에게 남아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만을 채무자 명의로 변경하여 놓더라도 법원이 그 면허만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자 명의의 변경만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94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3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청구취지 ①항의 일부)와 가액반환(청구취지 ④항 중 자동차 시세 1,452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유가 없고, 등록번호(차량번호 1 생략)가 표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청구취지 ②항의 일부)와 가액반환(청구취지 ④항 중 번호판 가격 700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강제집행으로 압류, 환가할 수 없는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와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0. 4. 1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차대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4자동차라 한다)를 신차로 매수하여 여기에 등록번호(차량번호 2 생략)를 부여하여 신규 등록한 사실, 피고는 약 3년이 경과한 2023.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제4자동차와 위 등록번호(차량번호 2 생략)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받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23. 5. 15. I에게 이 사건 제4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준 사실, I는 같은 날인 2023. 5. 15. 이 사건 제4자동차에 등록번호(차량번호 9 생략)를 부여하여 변경 등록하고,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23. 5. 16. 신차로 매수한 차대번호 J자동차에 위(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신규 등록한 사실, 피고는 C에 번호판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제4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표상하는 등록번호(차량번호 2 생략)만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제4자동차는 C으로부터 I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4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청구취지 ①항의 일부)와 가액반환(청구취지 ④항 중 자동차 시세 978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유가 없고, 등록번호(차량번호 2 생략)가 표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청구취지 ②항의 일부)와 가액반환(청구취지 ④항 중 번호판 가격 700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자동차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3. 4. 2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자동차(차대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5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기존의 등록번호(차량번호 10 생략)을 변경하여(차량번호 3 생략)으로 등록한 사실, 그로부터 5일 후인 2023. 4. 26.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제5자동차와 위 등록번호(차량번호 3 생략)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받아 등록번호를(차량번호 11 생략)로 변경하고, 다시 그 다음 날인 2023. 4. 27. C에 이 사건 제5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등록번호(차량번호 11 생략)를 넘겨준 사실(이러한 매매와 재매매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5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없이 등록번호만을 교환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3 생략)을, C은 (차량번호 11 생략)를 취득한 셈이다), 피고는 같은 날인 2023. 4. 27. 위와 같이 분리된 등록번호(차량번호 3 생략)을 신차로 구입한 차대번호 L 자동차에 부여하여 신규로 등록하고, C은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한 이 사건 제5자동차에 2023. 5. 11. 등록번호(차량번호 4 생략)을 부여하여 변경 등록한 사실(이로써 피고는 2023. 4. 21. C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만을 매수하여 자신의 신차에 부여한 셈이고1), C은 이 사건 제5자동차를 그대로 보유한 채 그 등록번호만을(차량번호 3 생략)→(차량번호 11 생략)→(차량번호 4 생략)로 순차 변경한 셈이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3. 6. 8.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제5자동차와 그 등록번호(차량번호 4 생략)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받고2), 12일 후인 2023. 6. 20. M에 다시 이 사건 제5자동차와 그 등록번호(차량번호 4 생략)을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준 사실, M은 같은 날인 2023. 6. 20. 이 사건 제5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차량번호 4 생략)에서 (차량번호 12 생략)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C에(차량번호 3 생략)의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5자동차와 관련 등록번호 2개는 C, 피고, M 등 3자간에 그 거래가 이루어진데다가 등록번호의 잦은 변경을 위하여 매매와 재매매 등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앞의 사례에 비하여 더 복잡하지만, 결국 C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이고, 이 사건 제5자동차는 C이 M에 매도한 것이며,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는 여전히 C에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5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청구취지 ①항의 일부)와 가액반환(청구취지 ④항 중 자동차 시세 1,821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유가 없고, 등록번호(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이 각 표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청구취지 ②항의 일부)와 가액반환(청구취지 ④항 중 번호판 가격 1,400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각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청구와 그 원상회복으로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가액반환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이거나 사해행위의 목적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창현

별지

1) 원고가 청구취지 ②항에서 2023. 5. 10.자 (차량번호 3 생략)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함

2) 원고가 청구취지 ①항과 ②항에서 2023. 6. 8.자 이 사건 제5자동차와 등록번호 (차량번호 4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함